



의정활동보고서



제272회 임시회(2014. 8. 22 ~ 9. 4)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제272회 임시
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당초 이번 임시회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고 독도수호 의지를 만방에 밝히는 독도수호 결의
대회를 우리 땅 독도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기상여건
악화로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최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비회기 중에도 일본의 2014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성명서 발표,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상호방문과 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및 연찬회 개최, 구제역 방역대책 및 쌀 관세화
현안 보고회 참석 등 도정과 민생현장을 살피는 폭넓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더위와 가뭄 속에도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활동,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을지연습훈련, 구제역 방역 등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10대 도의회 원구성 후 첫 도정질문과 추경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아직 생소하고 궁금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도의회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질문과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고유의 큰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 도민이 다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 대책, 사회복지 시설과 근로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민생해결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활발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차 례

I. 개 황	99
II. 의사일정	102
III. 의안처리	112
IV. 민원처리	113
V. 본회의 보고사항	115
VI. 5분 자유발언	136
<input type="checkbox"/> 남진복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울릉)	136
<input type="checkbox"/> 구자근 의원(교육위원회/구미)	139
<input type="checkbox"/> 이상구 의원(문화환경위원회/포항)	143

부 록

<input type="checkbox"/> 조례안(15건)	149
<input type="checkbox"/> 예산안(2건)	245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72회 임시회는 2014년 8월 2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9월 4일까지 14일간의 회기동안 4차의 본회의와 14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10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8월 22일(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일반사항 보고에 이어 남진복 의원의 “울릉도, 독도 실효적 발전방안”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독도 수호 결의안”,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5일(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황재철 의원(기획경제위원회)의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부지 선정의 위법성”, “도로관리 관련”, “적정규모 학교 관련” 등과 이진락 의원(문화환경위원회)의 “도금고 효율적 운영 대책 관련”, “신라왕경사업 적극적 추진 대책 관련”, “문화예술교육 확대 방안 관련”, 장용훈 의원(농수산위원회)의

“도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 관련”, “특정 지역 교원 편중 배치 관련”에 관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폭넓은 질문을 하였다.

제3차 본회의는 8. 26(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먼저 김수문 의원(건설소방위원회)의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과 관련”,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행정 방식과 관련”, “도내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실크로드 체험 사업과 관련”, “경북형 새마을사업과 관련”과 강영석 의원(교육위원회)의 “쌀 관세화 결정에 따른 경북도의 대책과 정부 대책 요구 계획과 관련”한 도정질문이 있었다.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선임의 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건 등 15건의 안건처리를 하였다.

제4차 본회의는 9. 4(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구자근 의원(교육위원회)의 “참전유공자 예우와 관련”, 이상구 의원(문화환경위원회)의 “도립 공공도서관 건립의 전면 재검토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안건심사가 이어졌다.

1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예산안, 동의안 등 기타안 18건으로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중 “경상북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고, 예산안중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등 2건도 수정가결 되었으며 18건의 안건은 원안 통과되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2014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각 특별위원회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과 업무보고가 있었다.

이번 272회 임시회는 새롭게 출범된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원 구성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도정질문 등이 있었던 뜻 깊은 회기였으며,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을 생각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고, 밝고 힘찬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초석이 되는 회기가 되었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 가. 집회구분 : 임시회
-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 다. 집회일시 : 2014년 8월 22일(금) 14:00

2. 회 기

- 가. 회의기간 : 2014년 8월 22일 ~ 9월 4일(14일간)
-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4회(누계 8회)
 - 위원회

(단위 : 건)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24	2	2	2	2	1	3	2	3	7
누 계	45	4	5	5	5	5	6	4	4	7

※ 누계는 제10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2(금) 14: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5분 자유발언 ○ 남진복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독도 수호 결의안 ○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8. 25(월)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input type="checkbox"/>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황재철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이진락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장용훈 의원(농수산위원회)	
8. 26(화) 11:00 (제3차)	<input type="checkbox"/>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김수문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강영석 의원(교육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6(화) 11:00 (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9. 4(목) 11:00 (제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자근 의원(교육위원회) ○ 이상구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4(목) 11:00 (제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영일만신항만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부권 신공항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2(금) 15: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 심사 <input type="radio"/>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협의 의 건 <input type="radio"/>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input type="radio"/>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input type="radio"/>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input type="radio"/>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input type="radio"/>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26(화) 10: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input type="radio"/> 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6(화) 15:3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심사 <input type="radio"/> 경상북도고문번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input type="radio"/>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input type="checkbox"/>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input type="radio"/> 기획조정실 <input type="radio"/> 규제개혁추진단, 미래전략기획단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7(수)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input type="radio"/> 대변인실, 일자리투자본부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심사 <input type="radio"/>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input type="radio"/>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input type="radio"/> 창조경제산업실 <input type="checkbox"/>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input type="radio"/>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규제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6(화) 15:20 (제1차)	<input type="checkbox"/>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input type="radio"/> 여성정책관실, 경북도립대학교, 보건복지국	
8. 27(수)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심사 <input type="radio"/> 경상북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radio"/>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radio"/>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input type="checkbox"/>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input type="radio"/> 안전행정국,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input type="radio"/> 보건복지국	

〈문화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6(화) 15:40 (제1차)	<input type="checkbox"/>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input type="checkbox"/> 보건환경연구원	
8. 27(수)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업무 보고 <input type="checkbox"/> 문화관광체육국, 보건환경연구원 <input type="checkbox"/>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input type="checkbox"/>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7(수) 10:00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심사 <input type="checkbox"/>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경상북도 영일만 신항 민자사업 출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input type="checkbox"/> 농축산국,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6(화) 15:30 (제1차)	<input type="checkbox"/>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input type="checkbox"/> 건설도시방재국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심사 <input type="checkbox"/>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input type="checkbox"/>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input type="checkbox"/>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27(수) 10:30 (제2차)	<input type="checkbox"/>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input type="checkbox"/> 소방본부, 도청이전추진본부, 건설도시방재국	
9. 4(목) 10:00 (제3차)	<input type="checkbox"/> 안전 심사 <input type="checkbox"/> 남부권 신공항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교육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6(화) 15:3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 심사 <input type="checkbox"/>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	
8. 27(수) 11:10 (제2차)	<input type="checkbox"/>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1(월) 10:40 (제2차)	<input type="checkbox"/>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input type="checkbox"/>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규제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 <input type="checkbox"/>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input type="checkbox"/> 감사관실·여성정책관실·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input type="checkbox"/> 안전행정국·보건복지국	
9. 2(화) 10:40 (제3차)	<input type="checkbox"/>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input type="checkbox"/>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input type="checkbox"/> 농축산국·동해안발전본부·농업기술원 <input type="checkbox"/> 의회사무처 <input type="checkbox"/> 건설도시방재국·도청이전추진본부·소방본부	
9. 3(수) 10:40 (제4차)	<input type="checkbox"/> 안전 심사 <input type="checkbox"/>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input type="checkbox"/>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input type="checkbox"/>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input type="checkbox"/>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윤리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6(화) 14: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 심사 <input type="checkbox"/>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input type="checkbox"/>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6(화) 14: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 심사 <input type="radio"/>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input type="radio"/>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6(화) 14: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 심사 <input type="radio"/>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input type="radio"/>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6(화) 14: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 심사 <input type="radio"/>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input type="radio"/>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9. 4(목) 10:2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주요업무보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6(화) 14: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 심사 <input type="radio"/>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input type="radio"/>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9. 4(목) 10:2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주요업무보고	

Ⅲ. 의안처리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심 의·의 결				부 결	폐 안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원 안	수 정						
계	35 (51)	35 (49)	30 (44)	5 (5)					0 (2)	
조 례 안	소 계	15 (18)	15 (18)	12 (15)	3 (3)					
	의회 제안	9 (10)	9 (10)	8 (9)	1 (1)					
	도지사 제출	5 (7)	5 (7)	3 (5)	2 (2)					
	교육감 제출	1 (1)	1 (1)	1 (1)						
규 칙 안										
예산·결산	2 (4)	2 (2)	1 (1)	1 (1)					0 (2)	
동의·승인	2 (2)	2 (2)	1 (1)	1 (1)						
건의안	1 (1)	1 (1)	1 (1)							
결의안	7 (8)	7 (8)	7 (8)							
기 타 안 (청원포함)	8 (18)	8 (18)	8 (18)							

※ ()내는 제10대 의회 누계임.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10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6 (8)	3 (4)		1 (1)			(1)	2 (2)		
의 회 운 영										
기 획 경 제										
행 정 보 건 복 지										
문 화 환 경	1 (1)							1 (1)		
농 수 산	1 (2)	1 (1)					(1)			
건 설 소 방	3 (4)	1 (2)		1 (1)				1 (1)		
교 육	1 (1)	1 (1)								
특 별 위 원 회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6 (6)	6 (6)				2 (2)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환경						1 (1)
농 수 산	2 (2)	2 (2)				
건설소방	3 (3)	3 (3)				1 (1)
교 육	1 (1)	1 (1)				
특별위원회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 17건(조례안 11, 예산안 2, 동의안 2, 결의안 2)

제출·발의자 (접수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경상북도지사 (2014. 8. 1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각 상임위 (교육위 제외) (2014. 8. 12)
"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2014. 8. 12)
"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도기육의원 외 3명 (2014. 8. 11)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2014. 8. 1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4. 8. 12)
"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강영석의원 외 12명 (2014. 8. 11)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 (2014. 8. 12)
박문하의원 외 9명 (2014. 8. 11)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14. 8. 12)
김수문의원 외 8명 (2014. 8. 11)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천회의원 외 8명 (2014. 8. 11)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2014. 8. 11)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교육 (2014. 8. 12)
"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농수산위원회 (2014. 8. 18)	독도 수호 결의안	-
"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2. 조례공포 사항 : 3건

이송일	이송처	건 명	공 포 일
2014. 7. 22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4. 7. 31 (제3555호)
"	"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조례	" (제3556호)
"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57호)

3. 위원회 활동 사항

위 원 회	일 자	장 소	참석의원	활 동 내 용
의회운영위원회	2014. 7. 22 ~ 7. 23	경주	위원장 외 13명	○ 상임위 워크숍 개최 - 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관련 토론회 등
기획경제위원회	2014. 7. 31 ~ 8. 1	포항	위원장 외 10명	○ 상임위 현지확인 - 소관 출연기관 공사현장 방문, 공사 진척상황 파악 및 관계자 격려 -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및 토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14. 8. 18 ~ 8. 20	제주도	위원장 외 8명	○ 상임위 연찬회 개최 - 위원회 활동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 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관련 토론회 - 주요 사업(시설) 견학 및 문화탐방
농수산위원회	2014. 7. 28	도청 상황실	위원장 외 9명	○ 집행부 현안 업무보고 - 구제역 방역대책 및 쌀 관세화 현안 보고회 참석 - 축산농가 백신 접종 실태 및 구제역 방역대책 질의 - 쌀 관세화 전환결정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 8. 13 ~ 8. 14	포항	위원장 외 14명	○ 예결특위 연찬회 개최 - 예산 및 결산안 심사기법 특강 - 201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사전설명 청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향 논의 등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도 단위 행사】

- 엘링크링거(주) 구미공장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4. 7. 23(수) 10:30
 - 장 소 : 구미(국가4단지 내)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이태식·장영석 의원

- 구미 고용복지센터 개소식
 - 일 시 : 2014. 7. 23(수) 14:30
 - 장 소 : 구미 고용복지센터 대회의실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장영석·이흥희 의원

- 제14회 전국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 참석
 - 일 시 : 2014. 7. 28(월) 11:00
 - 장 소 : 성주문화원
 - 참 석 : 정영길 위원장, 이수경 의원

- 동해안 바다시대 선언 및 신동해안 발전 심포지엄 참석
 - 일 시 : 2014. 7. 28(월) 14:30
 - 장 소 : 포항 포스코 국제관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김희수·한창화 위원장, 박문하·박용선·배진석·이상구·이진락·장용훈·조주홍 의원

- 경상북도·포항시 ↔ 덕성학원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 참석
 - 일 시 : 2014. 7. 28(월) 16:30
 - 장 소 : 포항시청 대회의실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김희수 위원장,
장두욱·박문하·박용선·이상구 의원
- 2014 전국 청소년 락 페스티벌 참석
 - 일 시 : 2014. 7. 28(월) 18:00
 - 장 소 :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박문하·박용선 의원
- TBC 시사토론 녹화(※ 방영 : 8. 9(토) 08:40)
 - 일 시 : 2014. 7. 29(화) 09:30
 - 장 소 : TBC
 - 참 석 : 장대진 의장
- 사회복지나눔숲 자연휴양림 조성 현장 방문
 - 일 시 : 2014. 7. 29(화) 10:00
 - 장 소 : 칠곡군 일원
 - 참 석 : 김창규 의원
- 울릉도 지열발전소 자원탐사 업무협약 체결식 참석
 - 일 시 : 2014. 7. 29(화) 10:00
 - 장 소 : 울릉군청
 - 참 석 : 남진복 의원

-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4. 7. 29(화) 11:00
 - 장 소 : 대구그랜드호텔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 7월 대구·경북 지역발전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4. 7. 30(수) 07:30
 - 장 소 : 대구은행 본점
 - 참 석 : 장대진 의장
- 경상북도·영덕군↔삼성전자 영덕연수원 MOU체결식 참석
 - 일 시 : 2014. 7. 30(수) 15:00
 - 장 소 : 영덕군청
 - 참 석 : 조주홍·황재철 의원
- 제14회 포항바다국제공연예술제 참석
 - 일 시 : 2014. 7. 30(수) 20:30
 - 장 소 :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김희수 위원장,
박문하·박용선 의원
- 나노융합기술원 설립 10주년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4. 7. 31(목) 11:00
 - 장 소 :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
 - 참 석 : 이상구 의원

- 제3회 예천용궁순대 축제 참석
 - 일 시 : 2014. 7. 31(목) 16:30
 - 장 소 : 예천군 용궁면 용궁전통시장
 - 참 석 : 안희영 의원

- 제4회 국제패트roller대회 환영 리셉션 참석
 - 일 시 : 2014. 8. 1(금) 18:00
 - 장 소 : 상주 시민체육관
 - 참 석 : 장대진 의장

- 제4회 국제패트roller대회 개영식 참석
 - 일 시 : 2014. 8. 1(금) 20:00
 - 장 소 : 상주 강창나루 공원
 - 참 석 : 강영석 · 김정숙 · 이운식 의원

- 포항국제불빛축제 기념 오픈 배드민턴대회 참석
 - 일 시 : 2014. 8. 2(토) 11:00
 - 장 소 : 포항공대체육관
 - 참 석 : 장두욱 · 박문하 · 박용선 의원

- 제11회 포항국제불빛축제 참석
 - 일 시 : 2014. 8. 2(토) 19:30
 - 장 소 :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 참 석 : 장대진 의장, 장경식 부의장, 김희수 · 정영길 ·
윤성규 · 한창화 위원장, 장두욱 · 김종영 · 박문하 ·
박용선 · 이동호 · 이상구 의원

- **청도 태풍피해 현장(신원천) 방문**
 - 일 시 : 2014. 8. 3(일) 09:00
 - 장 소 : 청도 운문면 신원리
 - 참 석 : 정상구 의원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4. 8. 5(화) 10: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 **제4회 국제패트럴 잼버리대회 폐영식 참석**
 - 일 시 : 2014. 8. 5(화) 20:00
 - 장 소 : 상주강창나루공원
 - 참 석 : 이운식 의원
- **제54회 경상북도교육자료전 전시회 개관식**
 - 일 시 : 2014. 8. 6(수) 14:00
 - 장 소 : 안동강남초등학교 체육관
 - 참 석 : 이영식 위원장
- **일본 2014방위백서, 독도영유권주장 규탄성명서 발표회 참석**
 - 일 시 : 2014. 8. 6(수) 14:00
 - 장 소 : 도민의 방
 - 참 석 : 장대진 의장, 윤창욱·장경식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배진석 의원

- **3대 문화권 문경녹색문화 상생벨트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4. 8. 6(수) 16:00
 - 장 소 : 문경 석탄박물관
 - 참 석 : 장대진 의장, 고우현·박영서 의원
- **태풍대비 저수지 긴급점검 현장 참석**
 - 일 시 : 2014. 8. 7(목) 14:00
 - 장 소 : 의성 행촌지(의성읍 업리)
 - 참 석 : 김수문 의원
- **제8회 포항칠포재즈페스티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4. 8. 7(목) 19:00
 - 장 소 : 포항 칠포해수욕장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김희수 위원장,
장두욱·박문하 의원
- **한울원전 지역사무소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4. 8. 8(금) 11:30
 - 장 소 : 한울원전 본부 대강당
 - 참 석 : 장용훈 의원
- **제58회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 참석**
 - 일 시 : 2014. 8. 11(월) 09:00
 - 장 소 : 포항 탑산 전몰학도 충혼탑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김희수 위원장, 장두욱·박문하·
박용선 의원

-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4. 8. 11(월) 15: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장대진 의장

- **경북도의원·포항교육장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4. 8. 11(월) 19:00
 - 장 소 : 한동한정식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 참석**
 - 일 시 : 2014. 8. 12(수) 15:00
 - 장 소 : 세종시의회
 - 참 석 : 장대진 의장

- **제69주년 광복절기념기획전 “경북인의 의열투쟁”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4. 8. 13(수) 11:00
 - 장 소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 참 석 : 이영식 위원장, 김인중 의원

- **포항시 도민참여교육 참석**
 - 일 시 : 2014. 8. 13(수) 14:00
 - 장 소 : 포항시청 대잠홀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포항시선수단 준비상황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4. 8. 13(수) 14:00
- 장 소 : 포항 뱃머리마을 문화관 대강당
- 참 석 : 장두욱·박문하·박용선 의원

○ 경상북도의회 역대의장 초청 간담회

- 일 시 : 2014. 8. 14(목) 11: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장대진 의장, 윤창욱·장경식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 제69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참석

- 일 시 : 2014. 8. 15(금) 10:00
- 장 소 : 김천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장대진 의장, 윤창욱 부의장, 홍진규 위원장,
김봉교·김인중·배영애 의원

○ 경북자율방범연합회 안전한 경북, 행복한 경북, 경북 지킴이
다짐대회 참석

- 일 시 : 2014. 8. 17(일) 10:00
- 장 소 : 구미 지산 체육공원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 제5회 경상북도 유림서예대전 참석
 - 일 시 : 2014. 8. 19(화) 11:00
 - 장 소 : 안동 예술의 전당
 - 참 석 : 장대진 의장
-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을지연습 위문
 - 일 시 : 2014. 8. 19(화) 15:00
 - 장 소 : 도 충무시설
 - 참 석 : 장대진 의장, 윤창욱·장경식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 경북도당위원장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초청 간담회
 - 일 시 : 2014. 8. 21(목) 12:00
 - 장 소 : 동심각
 - 참 석 : 장대진 의장, 윤창욱·장경식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시·군 단위 행사】

- 제80주년 수방의 날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4. 7. 23(수) 10:00
 - 장 소 : 낙동강둔치
 - 참 석 : 김위한 의원

- 한국노총위원장-장경식 부의장 간담회 및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 일 시 : 2014. 7. 23(수) 11:00
 - 장 소 :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 참 석 : 장경식 부의장
- 의성군 금성면, 의성읍·단촌면·점곡면, 옥산면·사곡면, 춘산면·가음면 주민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4. 7. 23(수), 7. 24(목), 8. 2(토), 8. 9(토)
 - 장 소 : 금성면사무소
 - 참 석 : 최태림 의원
- 제6회 의성마늘배 전국컬링대회 개최식 참석
 - 일 시 : 2014. 7. 23(화) 11:00
 - 장 소 : 의성컬링센터
 - 참 석 : 김수문 의원
- 안동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여인상 시상 및 행복한 가정가꾸기 실천결의대회 참석
 - 일 시 : 2014. 7. 24(목) 10:00
 - 장 소 :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 참 석 : 김인중 의원
- 제11회 안동꽃굿축제
 - 일 시 : 2014. 7. 25(금) 10:00
 - 장 소 : 안동 와룡농협
 - 참 석 : 이영식 위원장

- 구미시 형곡2동 반상회 사전교육 참석
 - 일 시 : 2014. 7. 25(금) 11:00
 - 장 소 : 주민센터 회의실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 경산·청도지역 도의원과의 소방정책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4. 7. 25(금) 11:00
 - 장 소 : 경산소방서
 - 참 석 : 박권현·윤성규 위원장, 배한철·오세혁 의원

- 구미 형곡2동 통장협의회 7월 반상회 사전교육 참석
 - 일 시 : 2014. 7. 25(금) 14:00
 - 장 소 : 구미 형곡2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 (사)한국국악협회 문경지부 창립총회 참석
 - 일 시 : 2014. 7. 25(금) 15:00
 - 장 소 : 문경 영강문화센터 3층
 - 참 석 : 박영서 의원

- 제12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4. 7. 25(금) 18:00
 - 장 소 : 김천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나기보 의원

- **대한요트협회장기배 요트대회 참석**
 - 일 시 : 2014. 7. 25(금) 19:00
 - 장 소 : 울진 염전해수욕장
 - 참 석 : 황이주 위원장

- **구룡포 상징조형물 준공 제막식 참석**
 - 일 시 : 2014. 7. 25(금) 19:00
 - 장 소 : 포항시 구룡포읍 구룡포공원
 - 참 석 : 이정호 의원

- **제16회 봉화은어축제 참석**
 - 일 시 : 2014. 7. 26(토) 13:40
 - 장 소 : 봉화읍 내성천 일원
 - 참 석 : 김인중·박현국 의원

- **영천시 2014 물가대책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4. 7. 29(화) 14:00
 - 장 소 : 영천시청 영상회의실
 - 참 석 : 한혜련 의원

- **고령군 구제역 방역 상황실 방문**
 - 일 시 : 2014. 7. 29(화) 15:00
 - 장 소 :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 참 석 : 박정현 의원

- 2014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회 및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4. 7. 30(수) 10:00
 - 장 소 : 영주국민체육진흥센터
 - 참 석 : 박성만 의원

- 칠곡군 도정협력실 현판식 참석
 - 일 시 : 2014. 7. 30(수) 11:00
 - 장 소 : 칠곡군청
 - 참 석 : 김창규 의원

- 칠곡군 도정협력실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4. 7. 30(수) 14:00
 - 장 소 : 칠곡군
 - 참 석 : 김정숙 의원

- 안동 가뭄피해 현장방문
 - 일 시 : 2014. 7. 30(수) 14:00
 - 장 소 : 안동 도산면 원천리, 남선면 신석리 일원
 - 참 석 : 김명호 의원

- 2014 포항해변전국가요제 참석
 - 일 시 : 2014. 7. 30(수) 19:30
 - 장 소 :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이상구 의원

○ 2014 군민에게 다가가는 『한여름밤 음악회』 참석

- 일 시 : 2014. 7. 31(목) 19:30
- 장 소 : 성주 대가 농협집하장
- 참 석 : 정영길 위원장

○ 영천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참석

- 일 시 : 2014. 8. 1(금) 11:00
- 장 소 : 임고강변공원
- 참 석 : 김수용 의원

○ 윤상직 산업자원부장관과의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4. 8. 1(금) 18:00
- 장 소 : 울진군청
- 참 석 : 황이주 위원장

○ 울진엑스포 뮤직팸페스티벌 참석

- 일 시 : 2014. 8. 1(금) 19:00
- 장 소 : 울진엑스포 공원
- 참 석 : 황이주 위원장

○ 포항 불빛 퍼레이드 참석

- 일 시 : 2014. 8. 1(금) 19:30
- 장 소 : 영일대 해수욕장
- 참 석 : 박용선 의원

- 2014 영덕 황금은어축제 참석
 - 일 시 : 2014. 8. 1(금) 19:30
 - 장 소 : 오십천 둔치 일원
 - 참 석 : 황재철 의원

- 2014 예천 은어·붕어잡이 체험행사 참석
 - 일 시 : 2014. 8. 2(토) 10:00
 - 장 소 : 예천읍 한천면
 - 참 석 : 도기욱 의원

- 울진 전국비치사커대회 참석
 - 일 시 : 2014. 8. 2(토) 10:00
 - 장 소 : 울진 후포해수욕장
 - 참 석 : 황이주 위원장

- 제34회 청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큰잔치 참석
 - 일 시 : 2014. 8. 2(토) 11:30
 - 장 소 : 청송 실내체육관
 - 참 석 : 윤종도 의원

- 제18회 문경 칠석 차 문화제 참석
 - 일 시 : 2014. 8. 2(토) 17:00
 - 장 소 :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 참 석 : 고우현 의원

- 울릉도 해변가요제 참석
 - 일 시 : 2014. 8. 2(토) 19:00
 - 장 소 : 울릉군 저동항
 - 참 석 : 남진복 의원

- 일연선사 제725주기 다례제 참석
 - 일 시 : 2014. 8. 3(일) 10:00
 - 장 소 : 군위 인각사 국사전
 - 참 석 : 홍진규 위원장

-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한마당 참석
 - 일 시 : 2014. 8. 5(화) 10:30
 - 장 소 : 구미 참빛공원
 - 참 석 : 장영석·이흥희 의원

- 경주 황오동 기관·단체장 연석회의 참석
 - 일 시 : 2014. 8. 5(화) 14:00
 - 장 소 : 황오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 참 석 : 이진락 의원

- 제12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폐막식 참석
 - 일 시 : 2014. 8. 5(화) 17:30
 - 장 소 :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참 석 : 배영애 의원

○ 2014 안동시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

- 일 시 : 2014. 8. 6(수) 11:00
- 장 소 : 안동 탈춤공원
- 참 석 : 장대진 의장, 김인중 의원

○ 울릉도 오징어축제 참석

- 일 시 : 2014. 8. 6(수) ~ 8. 8(금)
- 장 소 : 울릉도 일원
- 참 석 : 남진복 의원

○ 청도복숭아 판매행사 참석

- 일 시 : 2014. 8. 7(목) 12:00
- 장 소 : 서울 농협하나로클럽
- 참 석 : 정상구 의원

○ 상주시 이·통장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4. 8. 8(금) 09:30
- 장 소 : 상주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운식 의원

○ 성주유림회관 건립 안전기원 고유제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8. 8(목) 10:00
- 장 소 : 성주향교
- 참 석 : 이수경 의원

- **건강새마을조성사업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4. 8. 8(목) 14:40
 - 장 소 : 영양 사례마을활성화센터
 - 참 석 : 남천희 의원

- **2014 경주 한여름 꽃축제 참석**
 - 일 시 : 2014. 8. 8(금) 16:00
 - 장 소 : 경주 동부사적지 남쪽 꽃단지 내
 - 참 석 : 배진석·최병준 의원

- **포항시의회 지역도의원 초청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4. 8. 8(금) 18:00
 - 장 소 : 포항시청
 - 참 석 : 박문하 의원

- **2014 아트인구미 지산샛강 어울림한마당 참석**
 - 일 시 : 2014. 8. 8(금) 19:30
 - 장 소 : 구미 지산샛강 생태공원
 - 참 석 : 윤창욱 부의장, 구자근 의원

- **제4회 경산시 대구·경북 동호인 친선 탁구대회 참석**
 - 일 시 : 2014. 8. 9(토) 09:00
 - 장 소 : 경산실내체육관
 - 참 석 : 조현일 의원

- **칠곡군 제7회 가산산성 축제 참석**
 - 일 시 : 2014. 8. 9(토) 19:00
 - 장 소 : 가산산성 주차장
 - 참 석 : 곽경호 의원

- **포항시장·도의원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4. 8. 12(화) 11:00
 - 장 소 : 포항시청
 - 참 석 : 김희수 위원장

- **2014 포항시장배 우수팀초청 단체 및 개인 유도대회 참석**
 - 일 시 : 2014. 8. 14(목) 10:00
 - 장 소 : 포항실내체육관
 - 참 석 : 장두욱 의원

- **한여름밤의 음악회 참석**
 - 일 시 : 2014. 8. 14(목) 19:30
 - 장 소 : 김천실내체육관 특설무대
 - 참 석 : 김응규 의원

- **2014 제6회 구미아리랑제 참석**
 - 일 시 : 2014. 8. 16(토) 19:30
 - 장 소 : 금오산 분수광장
 - 참 석 : 이태식 의원

VI. 5분 자유발언

□ 2014년 8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남진복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울릉도, 독도 실효적 발전방안>>

3백만 경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도를 지역구에 두고 있는 울릉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울릉도·독도의 현실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강력히 대응하고, 우리의 영토 수호권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추진했던 이번 독도현장 개최식이 기상악화로 무산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애국심의 상징인 독도 임시회 개최를 추진해 오신 장대진 의장님과 의장단,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울릉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을 기약했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독도는 우리에게 역사·민족·영토 의식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일본 식민지 역사에 대한 청산, 주권확립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한민족 자존의 섬입니다. 그리고 독도의 어머니섬인 울릉도는 독도의 지속적이고도 실효적 지배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경상북도 유일의 도서낙도로 남·서해 어느 섬보다도 중요한 해양 개발의 보고이며, 러시아·중국·북한·일본 등 5개국의 중심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안보적 요충지입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독도를 수호하고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 유인화 및 접근성 개선, 울릉도일주도로 연결, 울릉공항 조성 등에 이르기까지 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경험하신 바와 같이 울릉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연간 100여 일 가량 풍랑 등으로 인하여 육지와 유일한 연결수단인 여객선이 결항하는 바람에 일상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울릉도 정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크나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기상악화로 인한 포항~울릉 간 여객선 결항일이 무려 45일을 넘습니다. 이로 인하여 생필품 품귀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주민이 대책 없이 장기간 고립되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담보 못 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평생 이같은 상황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온 울릉주민들의

생존권적 이동권을 다소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항일이 많은 겨울철만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운항 중인 정기여객선 또는 동일 기준의 대체 선박에 대하여 운항손실비용만큼의 유류비를 지원, 기상특보상황 이외에는 여타의 사유를 불문하고 정상운행토록 하여 울릉주민들의 이동권과 기본적 생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서민 울릉도의 접근성 개선이야말로 곧 독도 영유권 강화의 핵심입니다. 아울러 주변국의 위협, 지역적 고립 등으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울릉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기본생활권 보장, 그리고 독도 영유권의 명확한 법제화를 위해 추진된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이 지난 2013년 9월 25일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21세기 환동해 시대의 중심거점지역이자 독도 영유권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접경지역인 울릉도·독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한다면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김관용 지사님께서도 동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4년 9월 4일 제2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구자근 의원(교육위원회) ◎

<<참전유공자 예우와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 끝에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신선한 바람이 가을의 문턱에 왔음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유난히 빠른 추석은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에 직면한 참전유공자들에게는 더욱 힘겹고 부담되는 명절이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이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바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서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참전유공자가 받는 예우는 독립유공자 등과 비교해 볼 때 형편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가장 낮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통령 표창 독립유공자가 154만 원, 참전유공자와 같은 국가유공자 그룹에

속하는 재일학도의용군인도 월 116만 1,000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월 17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우리 경북에서도 도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만 원에 불과하는 등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참전유공자는 2만 4,413명이며,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2억 4,000만 원 정도이며, 수당으로 지출되는 규모는 경북의 연간 세출예산의 0.0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25전쟁 참전 군인과 월남 참전유공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1950년부터 3년여 기간 동안 이어진 6·25전쟁에서 참전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의 결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으며, 1964년 월남전 파병으로 폐허화된 한국이 아시아 및 국제사회에서 입지 강화는 물론 눈부신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들의 공로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다른 국가 유공자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국회에 발의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소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법률개정 등 국가보훈정책이 개선되기를 기다리기에는 고령화로 인해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현실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생존애국지사에게 월 1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 시 조의금까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우리 도가 1만 원, 각 시·군별로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립이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마땅한 일임을 인정하더라도 그에 비추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은 너무나 초라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만, 광역시 단위에서 서울시 등 최고 5만 원까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수준에 비하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북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보다 나은 수준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보훈과 관련된 업무는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참전유공자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매년 평균 6%씩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또 이를 대물림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도지사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1,435억 원을 투입하여 독립기념관 및 낙동강 호국벨트를 조성한 일은 큰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열정으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도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각종 사고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정작 관심과 마음으로 안아야 할 것은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감내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현실과 아픔도 엄연히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4년 9월 4일 제2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이상구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도립 공공도서관 건립의 전면 재검토 관련>>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도청이전 신도시에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도립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친근한 공공기관으로서 인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활동을 펼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접근이 용이해야 하고 이용의 편리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최근 정부의 도서관 정책 역시 생활밀착형 도서관 건립에 따른 작은 도서관 활성화, 도서관 건립 방식의 복합건물 형태 등으로 주민과 더욱 가까이 동네 도서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청이전 신도시에 건립을 계획 중인 공공도서관의 경우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근본기능과 현 정부 정책과는 너무나 상반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이주계획을 살펴보면 2027년이 되어서야 인구 10만의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이미 많이 늦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관 건립 계획대로라면 2018년 1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건립이 될 경우 10년 이상 텅빈 도서관을 보게 될 상황입니다. 또한 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 345억 2,000만 원에 도비가 252억 8,000만 원이나 소요됩니다. 분명 공사가 진행된다면 또 다시 공사비가 증액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공사비에 대한 이자와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1년에 50억원 이상은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경북도내 공공도서관은 총 6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습니다. 특히, 도청이전 신도시 인접지역인 안동에 4개의 공공도서관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예천에도 1개의 공공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획 중인 도립 공공도서관의 또 다른 건립취지가 현재 도내에는 지정·운영되지 않고 있는 지역 대표도서관을 신규 건립을 통해 운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역 대표도서관을 굳이 신규로 건립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16개 시·도 중 지역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인 시·도가 11개 지역에 달합니다. 이중 7개 지역은 기존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고, 신규로 건립하여 운영 중인 지역은 제주, 인천, 전남, 서울 등 4개 지역뿐입니다. 이처럼 대다수 광역시·도의 지역 대표도서관은 새로 건립하기보다는 기존의 공공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대규모 대표도서관 건립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예산과 운영경비가 소요되는 독립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지역 대표 도서관 지정 및 운영에 관련하여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하기보다는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62개 공공도서관 중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지정하여 새로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낭비를 막고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대표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독립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15건
- 예산안 : 2건

■ 조 례 안

-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9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를 “경상북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로 한다.

경상북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의 용어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①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상복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②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2.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 4 조(도의 책무) 도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4.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비생활 정보제공 및 교육실시
5.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사업자는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책무와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위해방지기준, 표시의 기준, 광고의 기준, 부당행위 기준, 개인정보보호기준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소비자의 권익증진

제 6 조(취약계층의 보호) 도는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7 조(안전대책의 강구) 도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건강·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8 조(소비자 교육) ①도는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능력을 높이며, 책임 있는 소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상시 실시할 수 있다.

②도는 소비자 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활용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도는 소비자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전문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도는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정보제공) ①도는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도는 소비자가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부당거래의 조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거래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부당거래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판매의도를 숨기고 접근하거나, 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인을 초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설득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3. 소비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상태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시키는 행위
4. 소비자나 소비자의 가족을 기만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당하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하게 하는 행위
5.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당한 판매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2조(시정권고 등)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권고, 위반사실의 공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3 장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경상북도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제 4 장 소비자행복센터의 설치 및 분쟁의 해결

제15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도지사는 소비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업무 전담기구로서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상담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권고
2.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3.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및 조사·연구
4. 소비자의 분쟁조정에 대한 지원
5. 소비자 종합정보망 운영·관리
6. 소비자 관련 제도·정책의 연구 및 건의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센터에 관한 조직·전담인력·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피해처리의 신청) 소비자는 센터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도 홈페이지, 서신, 방문 등에 의하여 피해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피해처리) ①센터는 피해처리신청을 접수한 경우 수리, 교환, 환불 등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피해처리의 기간,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소비자피해처리는 관련 법령 및 법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

제18조(타 소비자업무기구와의 협력) 도지사는 소비자피해처리 및 소비자능력 향상을 위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피해사례의 공포) 도지사는 소비자피해사례 가운데 주민에게 알리어 피해의 확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 홈페이지 공개, 책자 발간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 5 장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지원

제20조(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등록 취소) ①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소비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의 보완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의 지원) 도는 등록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6 장 소비자정책위원회

제22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소비자권익증진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행정조직의 설치, 운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시책에 대한 심의
4.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써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소비자업무담당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관련부서 본부·실·국장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일자리투자본부장, 농축산국장, 보건복지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원과 소비자와 관련되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소비자단체·경제인단체·여성단체,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2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견반영)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제27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조사절차 등

제28조(검사 및 자료제출)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명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검사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조례의 시행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공표) 도지사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시험·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 권익증진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 내용
3. 이 조례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의 내용

제30조(청문) 도지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공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법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소비자보호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보호센터는 이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로 본다.

제 3 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경상북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0조제2항의 “도지사는 소비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소비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의 보완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3월 이내의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p>제20조(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등록 취소) ① (생략)</p> <p>②도지사는 소비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20조(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등록 취소)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도지사는 소비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의 보완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기간규정 추가</p>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9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3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민간인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투자본부장, 환경산림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 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 4 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5 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관계 전문가 포함)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 조(규제심사 청구 및 절차) ①경상북도 실·국·본부장 및 직속 기관장(이하 “주관 실·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관 실·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 8 조(개선권고) ①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주관 실·국장에게 해당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주관 실·국장은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현황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추진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9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촉)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15명 이내의 경상북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 위촉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공모절차를 거치지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⑤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제 3 조(임기)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기간은 실적에 따라 2회로 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 등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 4 조(고문사항) 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

1. 도 또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자문 사항
4.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도지사는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에 따른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다.

제 5 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등을 기피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5. 제2조제4항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6 조(소송대리인) ①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을 고문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대구·경북 권역 이외에서 제기된 소송의 경우
3. 그 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도지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정보공개) ①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 홈페이지 등에 정보 공개한다.

1.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2.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 현황

②도지사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자문사항 정리 등) 고문변호사는 자문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실적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 실적부를 관리해야 한다.

제 9 조(수당 등의 지급)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수당 등의 지급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청 령 서 약 서

본인은 경상북도 고문변호사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 경상북도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
- 사전 조치 없는 변론 불참 및 제출 자료 누락 금지
-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성 명 :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동 의 서

본인은 경상북도 고문변호사로서 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등 위촉내용과 사건수임 현황내용 공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변호사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부

고문변호사 성명 :

성과 소명	의뢰일	문 의 내 용	회신일	회 신 내 용	비고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4년 8월 26일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행정환경변화 및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변호사 연임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제안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의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를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기간은 실적에 따라 2회로 한다”로 수정함.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의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를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기간은 실적에 따라 2회로 한다”로 수정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p>제 3 조(임기) ①<u>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 3 조(임기) ①<u>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기간은 실적에 따라 2회로 한다.</u></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연임기간 규정필요</p>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9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를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를 “경상북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지사는 매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의”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협 의 회”를 “위 원 회”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과학기술진흥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중 “도의”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심의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과학기술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심의·자문·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협의회의 기능)”을“(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심의”를 “심의·자문·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의 제목“(협의회의 구성)”을“(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제2항 중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업무 소관 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진흥업무 소관위원회 위원 1인”을 “의원 1명”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제2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협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의 제목 “(공동사업)”을 “(사업의 공동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지식기반산업 육성 지원”을 “지식기반 산업, 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회계년도”를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회계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3장(제

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연구개발 기획·관리 전담지원 조직) ①도지사는 인적 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업무의 개발 및 평가분석, 지표개발, 위탁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 기획·관리 전담지원 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도의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을 위한 지원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도지사는 매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행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③·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협 의 회</p> <p>제 3 조(과학기술진흥협의회) 도의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p> <p>제 1 조(목적) ----- ----- 경상북도----- ----- ----- -----.</p> <p>제 2 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②----- ----- 같은 법 ----- ----- 제6조의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위 원 회</p> <p>제 3 조(과학기술진흥위원회)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 ----- 심의·자문·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 6 조(위원의 임기)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껄워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이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제 6 조(위원의 임기) ----- ----- ----- 남은 기간 ----- -----</p>
<p>제 7 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u>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 한다.</u></p> <p>②·③ (생 략)</p>	<p>제 7 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u>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 8 조(회의) ① (생 략)</p> <p>②<u>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제 8 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u>위원회</u>----- -----</p>
<p>제 9 조(소위원회) ①<u>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② (생 략)</p>	<p>제 9 조(소위원회) ①<u>위원회</u>----- ----- 위원회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 10 조(실비보상) <u>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 10 조(실비보상) <u>위원회</u>----- -----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 -----</p>

현행	개정안
<p>제11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협의회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1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p>
<p>제12조(공동사업) ①도지사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지식산업 집적지 조성 및 <u>지식기반산업</u> 육성 지원</p> <p>6. 기타 도지사가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2조(사업의 공동 추진) ① —————</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지식기반산업, 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p> <p>6. 그 밖에 —————</p> <p>—————</p> <p>②—————</p> <p>—————</p> <p>범위—————</p> <p>—————</p>
<p>제13조(산업기술연구단지지원) ①도지사는 <u>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u>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조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p>	<p>제13조(산업기술연구단지지원) ①—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 ————— ————— —————</p>

현행	개정안
<p>②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테크노파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소속 공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하게 할 수 있다.</p>	<p>②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p>
<p>③테크노파크의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 제1항에 따라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p>
<p>④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④ ————— 그 밖에 —————</p>
<p>제14조(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① (생략) 1. ~ 3. (생략) 4. 기타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p>	<p>제14조(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p>

현 행	개 정 안
<p>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보 칩</p> <p>제15조 (생 략)</p> <p>제16조 (생 략)</p>	<p>②----- ----- ----- 범위 ----- -----.</p> <p>제15조(연구개발 기획·관리 전담 지원 조직) ①도지사는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업무의 개발 및 평가분석, 지표개발, 위탁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 기획·관리 전담지원 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p> <p>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p> <p>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p>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9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신설한다.

②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⑫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휴가는 2회에 걸쳐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15일
 - ⑬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4년 8월 27일

제 안 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 이유

- 장기재직 휴가 대상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하위직 공무원 까지 확대하고, 휴가기간을 차등하여 보편적인 휴가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고자 제안함.

2. 주요 내용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제12항).

3. 수정 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3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휴가는 2회에 걸쳐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15일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3조(특별휴가)</p> <p>① (생략)</p> <p>②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p>	<p>제23조(특별휴가)</p> <p>①(현행과 같음)</p> <p>②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p>	<p>(현행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③ ~ ⑪ (생략) 〈신 설〉</p>	<p>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 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p> <p>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p> <p>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p> <p>③ ~ ⑪ (현행과 같음) ⑫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2회에 걸쳐 20일 이내의 장기재직휴가를</p>	<p>(현행과 같음) ⑫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 data-bbox="389 1128 480 1160">〈신 설〉</p>	<p data-bbox="683 562 935 831">연을 수 있다. 이 경우 1회 휴가기간은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하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p> <p data-bbox="683 1137 935 1263">⑬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 data-bbox="975 562 1227 927">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휴가는 2회에 걸쳐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p> <p data-bbox="975 943 1227 1122">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15일</p> <p data-bbox="975 1137 1163 1169">(개정안과 같음)</p>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9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설치및운용”을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으로 한다.

제2조 중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를 “경상북도공무원 주거
안정기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수입금

제3조제2항 중 “매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지시는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금운용관의 직무위임) 기금운용관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하 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부자의 자격은 경상북도 소속(도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경상북도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도 소속”이라 한다.)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대부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근속하고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이주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는 도 소속기관에 소속된 5급이하 공무원은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신청은 도청이전신도시 및 안동시·예천군지역에 주택을 매입·분양(신축포함)하거나 전세 입주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대부금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3%로 한다.”를 “대부금액 및 이자율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금출납공무원은 매 회계년도마다”를 “기금운용공무원은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7조의2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 운용조례</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u>경상북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설치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 2 조(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u>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제 3 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u>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p> <p>1. 2. (생 략) 3. <u>기타 수입금</u></p> <p>②도지사는 연간대부계획에 의한 기금 소요예산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u>매 회계년도</u>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p>	<p>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제 1 조(목적) ----- ----- ----- ----- <u>경상북도</u> <u>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u> -----.</p> <p>제 2 조(기금의 설치) ----- ----- <u>경상북도공무원</u> <u>주거안정기금</u>----- -----.</p> <p>제 3 조(기금의 조성) ①----- <u>각 호</u>-----.</p> <p>1.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 수입금</u></p> <p>②----- ----- ----- <u>회계연도마다</u> ----- -----.</p>

현 행	개 정 안
<p>제 4 조(기금의 관리) ②도지사는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p> <p>① (생략) ③ (생략) <신설></p>	<p>제 4 조(기금의 관리) ①도지사는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p> <p>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 4 조의2(기금운용관의 직무위임) 기금운용관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p> <p>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p>
<p>제 5 조(기금의 운용계획) 도지사는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p> <p>1.·2. (생략)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p>	<p>제 5 조(기금의 운용계획) ----- 회계연도마다 ----- -----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p>
<p>제 6 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1.·2. (생략) 3. 기타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 6 조(기금의 용도) ----- -----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인정하는 -----</p>

현 행	개 정 안
<p>제 7 조(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대부자의 자격은 경상북도 소속 (도본청 및 사업소)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대부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근속하고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무원으로 한다. ② (생략) <신설></p>	<p>제 7 조(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도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경상북도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도 소속”이라 한다.) ----- 3년 이상-----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 ② (현행과 같음) 제 7 조의2(이주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는 도 소속기관에 소속된 5급이하 공무원은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신청은 도청이전신도시 및 안동시·예천군 지역에 주택을 매입·분양(신축포함) 하거나 전세 입주하는 공무원으로 한다.</p>
<p>제 8 조(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금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 3%로 한다. 다만, 연체시 이자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의한다.</p>	<p>제 8 조(대부금액 및 조건) ----- ----- 및 이자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제10조에 따라----- -----.</p>

현행	개정안
<p>제 9 조(대부금일시상환) 다음 각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생략)</p> <p>1. ~ 3. (생략)</p>	<p>제 9 조(대부금일시상환) --- 각 호 -----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10조(대부업무 위탁등)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제4조제1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10조(대부업무 위탁등) ① ----- 대부 업무를 금융기관에----- -----.</p> <p>②제1항에 따라----- -----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출납공무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공무원은 회계연도마다----- ----- ----- -----.</p> <p>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p>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9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 농수산국장,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로컬푸드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4 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p> <p>① (생략)</p> <p>②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u>도 농수산국장 및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u>이 된다.</p> <p>③ ~ ④ (생략)</p>	<p>제 4 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로컬푸드정책업무 담당국장</u>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9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로 한다.

제2조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및 제16조”를 “「친환경농
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을 “(친환경농업실천
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매5년마다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를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따라 5년마다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육성계획”을 각각 “실천계획”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①항에 의하여 수립된 육성계획”을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육성계획”을 “실천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수산국장”을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육성계획”을 “실천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5조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26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u>친환경농업 육성법</u>」 제3조에 의하여 경상북도 (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 농업기술의 범위는 「<u>친환경농업육성법</u>」 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p> <p>제 3 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매5년마다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③도지사는 제①항에 의하여 수립된 육성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 1 조(목적) ——— 「<u>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라 경상북도</p> <p>—————</p> <p>—————</p> <p>—————</p> <p>—————</p> <p>제 2 조(적용범위) —————</p> <p>————— 「<u>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p> <p>제 3 조(친환경농업실천계획 수립) ①—</p> <p>—————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 —————</p> <p>—————</p> <p>—————</p> <p>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p> <p>—————</p>

현행	개정안
<p>제 4 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p> <p>①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③ (생략)</p> <p>④당연직 위원은 농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품질관리담당과장, 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본부장으로 한다.</p> <p>⑤위촉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친환경농업관련 대학교수, 친환경농업인단체 대표,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친환경농산물유통업체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p> <p>⑥~⑦ (생략)</p>	<p>제 4 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p> <p>①실천계획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경상북도 친환경농업업무 담당국장</u>, ----- -----.</p> <p>⑤----- ----- ----- ----- -----</p> <p>사람으로 -.</p> <p>⑥~⑦ (현행과 같음)</p>
<p>제 5 조(위원의 임기 및 운영)</p> <p>①~② (생략)</p>	<p>제 5 조(위원의 임기 및 운영)</p> <p>①~② (현행과 같음)</p>
<p>제 6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p> <p>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p>	<p>제 6 조(위원회의 기능) ----- -----.</p> <p>1. <u>실천계획</u> ----- -----</p>

현행	개정안
<p>2. ~ 4. (생략)</p> <p>5. 제15조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 실적 평가</p> <p>6. (생략)</p> <p>제10조(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①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농업인단체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1조(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2조(민간인증기관 육성)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육성 지원할 수 있다.</p> <p>③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2. ~ 4. (현행과 같음)</p> <p>5. 제15조에 따른 ----- -----</p> <p>6. (현행과 같음)</p> <p>제10조(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①----- ----- 범위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 ----- 범위 ----- ----- -----</p> <p>제12조(민간인증기관 육성) ----- 법 제26조에 따라 ----- ----- -----</p> <p>③----- ----- 범위 ----- ----- -----</p>

현 행	개 정 안
<p>②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육성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p>	<p>②----- 실천계획 ----- ----- 제4조에 따라 ----- ----- 실천계획 ----- -----.</p>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9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산림국장”을 “해양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녹색환경과장,
산림녹지과장, 도시계획과장”을 “수산업무담당과장, 관광업무담당
과장, 환경정책업무담당과장, 산림업무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해양개발과장”을 “해양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 운영조례</p> <p>제3조(구성) ①(생 략)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 위원장은 환경해양산림국장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수산진흥과장, 관광 진흥과장, 녹색환경과장, 산림녹지 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된다.</p> <p>④(생 략)</p> <p>제7조(간사) ①심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양개발과장이 된다.</p> <p>②(생 략)</p>	<p>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p> <p>제3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 ----- 해양업무담당국장-----. ③ ----- 수산업무담당과장, 관광업무 담당과장, 환경정책업무담당 과장, 산림업무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 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간사) ① ----- ----- 해양업무담당과장-----. ②(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9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투자유치본부장, 환경해양산림국장, 건설도시국장”을 “투자유치업무담당국장, 해양업무담당국장, 건설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u></p> <p>제3조(구성) ① ~ ②(생략)</p> <p>③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본부장, 환경해양산림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이 된다.</p> <p>④ ~ ⑤(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u></p> <p>제3조(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 투자유치업무담당국장, 해양업무담당국장, 건설업무담당국장 ——.</p> <p>④ ~ ⑤(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9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를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사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유의 검사
4.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위탁검사
5. 법 제12조3의제4항에 따른 축산물의 재검사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입축산물 검사
7. 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검사의 신청 등) 제3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목적에 따른 도축검사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7호의2 서식), 위탁검사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검사대상물과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를 붙여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이하 “가축위생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 서식에”로 한다.

제6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재교부 받고자”를 “재교부 받고자”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수수료의 기준 등)”을 “(수수료의 기준 및 징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각호의 검사수수료는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고시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을 “각 호의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 검사수수료 및 검사 의뢰 기준」으로,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에 따른다.

제8조 중 “검사 의뢰한”을 “품질관리 또는 단속 등을 위하여 의뢰 하는”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검사시료와 수수료”를 “검사시료와 납부한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검사 신청인이 검사 의뢰 시점에서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자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를 “(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4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경상북도지사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문구를 기재

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를 “제11조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경상북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경상북도보 또는 축산 관련 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표1을 별표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수 수 료(원)	비 고
1. 소, 말, 사슴, 타조	2,000	마리당
2. 돼지, 양, 기타 포유류	700	마리당
3. 닭	6	마리당
4. 오리, 기타 조류	10	마리당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축산물 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쪽 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비 서 류	수수료 1. 검사성적서 1부당 100원
없 음	2. 영문번역본 1부당 200원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도축검사 수수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도축
검사수수료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5원으로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검 사 성 적 서

접 수 번 호		신청일자	
업체명 및 소재지	업 체 명	신 청 인	
	소 재 지		
의뢰자 및 의뢰기관	의 퇴 자	의뢰기관	
	소 재 지		
제 품 명		제품유형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검 사 및 의 퇴 목 적			
검사결과 및 판정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검 사 결 과	비 고
판 정		검사자	
위와 같이 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장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 margin-left: 10px;"> 직인 </div>			

※ 이 성적은 제시된 검사시료에 한하며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u> <u>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물검사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3조(적용대상)</u>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검사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육의 검사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의 검사 4.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검사 5.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축산물의 검사 	<p style="text-align: center;"><u>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u> <u>검사수수료 징수 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3조(적용대상)</u> ----- - 각 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사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유의 검사 4.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위탁검사 5. 법 제12조3의제4항에 따른 축산물의 재검사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입축산물 검사

현행	개정안
<p><u>제4조(검사의 신청 등) 법 제12조제 4항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축산물의 위탁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탁 검사신청서에 검사시료 및 기타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장(이하 "가축위생 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u></p> <p><u>제5조(검사성적서 등의 교부) 가축 위생시험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u></p> <p><u>제6조(검사성적서등의 재교부 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 성적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가축위생시험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7. <u>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u></p> <p><u>제4조(검사의 신청 등) 제3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목적에 따른 도축검사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7호의2 서식), 위탁 검사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검사대상 물과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 (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를 붙여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이하 "가축위생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제5조(검사성적서 등의 교부) ----- 제4조에 따라-----</u> ----- ----- 별지 제1호 서식에 -----.</p> <p><u>제6조(검사성적서 등의 재교부 신청) 제5조에 따라-----</u> ----- 재교부 받고자 ----- ----- (별지 제2호 서식)----- -----.</p>

현행	개정안
<p>제7조(수수료의 기준 등) ①제3조 각호의 검사수수료는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고시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에 따른 수수료 기준액을 적용하고, 그 밖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다만, 도축검사수수료는 <u>별표 1과 같다.</u></p> <p>②제1항의 수수료는 경상북도수입증지로 한다.</p> <p>제8조(수수료의 면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 의뢰한 축산물인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9조(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시료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 개시 전 검사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있을 시에는 반환할 수 있으며, 검사를 행한 후에도 그 사용 가치가 남아 있어 검사의뢰인이 검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p>	<p>제7조(수수료의 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 각 호의 검사수수료는 <u>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u> ----- ----- ----- <u>별표와</u> -----.</p> <p>②제1항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에 따른다.</p> <p>제8조(수수료의 면제) ----- ----- 품질관리 또는 단속 등을 위하여 의뢰하는 ----- -----.</p> <p>제9조(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 검사시료와 납부한 수수료-----, 다만, 검사 신청인이 검사 의뢰 시점에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지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u>제11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u> 제4조에 따라 의뢰된 검사의 결과는 <u>검사의뢰의 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 ①</u>가축위생시험소장은 검사신청인이 <u>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검사 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 등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u></p> <p><u>②</u>가축위생시험소장은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 등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그 말소 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검사를 한 물품명을 <u>경상북도보에</u> 공고하여야 한다.</u></p> <p>[<u>별 표</u>]</p>	<p><u>제11조(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u> <u>①</u>제4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p> <p><u>②</u>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u>경상북도지사 보증 또는 김정필이라는 문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u></p> <p><u>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 ①</u>----- ----- <u>제11조를</u> ----- <u>제6조에 따라</u> ----- ----- <u>②</u>----- <u>제1항에 따라</u> ----- ----- <u>경상북도보 또는 축산 관련 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다.</u></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도축검사수수료(제7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수수료(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1. 소, 말, 사슴, 타조</td> <td>2,000</td> <td>마리당</td> </tr> <tr> <td>2. 돼지, 양, 기타 포유류</td> <td>700</td> <td>마리당</td> </tr> <tr> <td>3. 닭, 오리, 기타 조류</td> <td>1,000</td> <td>100수 당</td> </tr> </tbody> </table> <p>[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가 축 위 생 시 험 소</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검사성적서</p> <p>1. 관련 : 2. 우리 소에 의뢰한 검사시료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p> <p>① 검사시료명 : ② 검사항목 : ③ 제 조 사 : ④ 성 적 :</p> <p style="text-align: right;">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장 직인</p> <p style="font-size: small;">이 성적은 제시된 검사시료에 한하며, 검사의뢰목적외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p> </div>	구 분	수수료(원)	비 고	1. 소, 말, 사슴, 타조	2,000	마리당	2. 돼지, 양, 기타 포유류	700	마리당	3. 닭, 오리, 기타 조류	1,000	100수 당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도축검사수수료(제7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수수료(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1. 소, 말, 사슴, 타조</td> <td>2,000</td> <td>마리당</td> </tr> <tr> <td>2. 돼지, 양, 기타 포유류</td> <td>700</td> <td>마리당</td> </tr> <tr> <td>3. 닭</td> <td>6</td> <td>마리당</td> </tr> <tr> <td>4. 오리, 기타 조류</td> <td>10</td> <td>마리당</td> </tr> </tbody> </table> <p><삭 제> [별지 제1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검 사 성 적 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접수번호</td> <td colspan="2"></td> <td>신청일자</td> <td></td> </tr> <tr> <td rowspan="2">업체명 및 소재지</td> <td>업체명</td> <td></td> <td>신 청 인</td> <td></td> </tr> <tr> <td>소재지</td> <td colspan="3"></td> </tr> <tr> <td rowspan="2">의뢰자 및 의뢰기관</td> <td>의뢰자</td> <td></td> <td>의뢰기관</td> <td></td> </tr> <tr> <td>소재지</td> <td colspan="3"></td> </tr> <tr> <td>제 품 명</td> <td colspan="2"></td> <td>제품유형</td> <td></td> </tr> <tr> <td>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td> <td colspan="4"></td> </tr> <tr> <td>검사 및 의뢰 목적</td>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검사결과 및 판정</td> </tr> <tr> <td>검사항목</td> <td>검사기준</td> <td>검사결과</td> <td colspan="2">비 고</td> </tr> <tr> <td></td> <td></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판 정</td> <td colspan="2"></td> <td>검사자</td> <td></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직인</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장</td> </tr> </table> <p>※ 이 성적은 제시된 검사시료에 한하며 검사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함.</p>	구 분	수수료(원)	비 고	1. 소, 말, 사슴, 타조	2,000	마리당	2. 돼지, 양, 기타 포유류	700	마리당	3. 닭	6	마리당	4. 오리, 기타 조류	10	마리당	접수번호			신청일자		업체명 및 소재지	업체명		신 청 인		소재지				의뢰자 및 의뢰기관	의뢰자		의뢰기관		소재지				제 품 명			제품유형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검사 및 의뢰 목적					검사결과 및 판정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결과	비 고							판 정			검사자		위와 같이 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장				
구 분	수수료(원)	비 고																																																																																																			
1. 소, 말, 사슴, 타조	2,000	마리당																																																																																																			
2. 돼지, 양, 기타 포유류	700	마리당																																																																																																			
3. 닭, 오리, 기타 조류	1,000	100수 당																																																																																																			
구 분	수수료(원)	비 고																																																																																																			
1. 소, 말, 사슴, 타조	2,000	마리당																																																																																																			
2. 돼지, 양, 기타 포유류	700	마리당																																																																																																			
3. 닭	6	마리당																																																																																																			
4. 오리, 기타 조류	10	마리당																																																																																																			
접수번호			신청일자																																																																																																		
업체명 및 소재지	업체명		신 청 인																																																																																																		
	소재지																																																																																																				
의뢰자 및 의뢰기관	의뢰자		의뢰기관																																																																																																		
	소재지																																																																																																				
제 품 명			제품유형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검사 및 의뢰 목적																																																																																																					
검사결과 및 판정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결과	비 고																																																																																																		
판 정			검사자																																																																																																		
위와 같이 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장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3호 서식]</p> <p style="text-align: right;">앞쪽</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처리 기간</td> </tr> <tr> <td colspan="3"></td> <td style="text-align: center;">즉 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 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민등록번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 소</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 적 서 발급번호</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발행연월일</td> <td></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신청부수</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용 도</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 또는 서명</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장 귀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구비서류</td> <td colspan="3">수수료 1. 검사성적서 1부당 1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없 음</td> <td colspan="3"></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뒤쪽(생 략)</p>	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			처리 기간				즉 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적 서 발급번호		발행연월일		신청부수				용 도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검사성적서 1부당 100원			없 음				<p>[별지 제2호 서식]</p> <p style="text-align: right;">앞쪽</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처리 기간</td> </tr> <tr> <td colspan="3"></td> <td style="text-align: center;">즉 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 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년월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 소</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 적 서 발급번호</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발행연월일</td> <td></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신청부수</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용 도</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 또는 서명</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장 귀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구비서류</td> <td colspan="3">수수료 1. 검사성적서 1부당 1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없 음</td> <td colspan="3">2. 영문번역본 1부당 200원</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뒤쪽(현행과 같음)</p>	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			처리 기간				즉 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성 적 서 발급번호		발행연월일		신청부수				용 도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검사성적서 1부당 100원			없 음	2. 영문번역본 1부당 200원		
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			처리 기간																																																																																																						
			즉 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적 서 발급번호		발행연월일																																																																																																							
신청부수																																																																																																									
용 도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검사성적서 1부당 100원																																																																																																								
없 음																																																																																																									
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			처리 기간																																																																																																						
			즉 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성 적 서 발급번호		발행연월일																																																																																																							
신청부수																																																																																																									
용 도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검사성적서 1부당 100원																																																																																																								
없 음	2. 영문번역본 1부당 200원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9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 감리원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로 한다.
제7조 중 “일정한 서식의 신고서”를 “별지 서식의 신고서”로 하고
【별지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 및 제11조 중 “법 제21조의4”를 각각 “법 제53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로 한다.

제13조 중 “감리업체”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3호 중 “감리원”을 각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부실공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신고공사	사 업 명		현장위치	
	공 종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공사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p>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 제12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p> <p>3. ~ 4. (생 략)</p> <p>제7조(신고·접수) ①(생 략)</p> <p>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일정한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p> <p>③(생 략)</p> <p>제9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발주청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p> <p>② ~ ③(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가 ----- -----.</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7조(신고·접수) ①(현행과 같음)</p> <p>②----- 별지 서식의 신고서 ----- -----.</p> <p>③(현행과 같음)</p> <p>제9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 ----- 법 제53조 ----- -----.</p> <p>② ~ ③(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0조(부실벌점 부과) ①(생략) ②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에 따른다.</p> <p>제11조(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청은 법 제21조의4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사람에게는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 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p> <p>제13조(판정결과에 따른 조치 등) 발주청은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사, 감리업체 및 해당업체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5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2. (생략) 3.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발주청이나 감리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중에 있는 경우 4. (생략)</p>	<p>제10조(부실벌점 부과) ①(현행과 같음) ②-----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 -----.</p> <p>제11조(입찰참가 제한 등) ----- -- 법 제53조 ----- ----- ----- -----.</p> <p>제13조(판정결과에 따른 조치 등) ----- ----- 건설기술용역업자----- -----.</p> <p>제15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 -----. 1.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2. (현행과 같음) 3.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실 공 사 신 고 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10%;">신 고 자</td> <td style="width: 20%;">성 명</td> <td style="width: 20%;">주민등록 번 호</td> <td style="width: 50%;"></td> </tr> <tr> <td>전화번호</td> <td>주 소</td> <td></td> </tr> <tr> <td rowspan="2">신고공사</td> <td>사 업 명</td> <td>현장위치</td> <td></td> </tr> <tr> <td>공 종</td> <td>발생일자</td> <td>년 월 일</td> </tr> <tr> <td>부실공사 내 용</td> <td colspan="3"></td> </tr> <tr> <td>증빙서류</td> <td colspan="3"></td> </tr> <tr> <td>비 고</td> <td colspan="3"></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p> </div>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주 소		신고공사	사 업 명	현장위치		공 종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공사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주 소																									
신고공사	사 업 명	현장위치																									
	공 종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공사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9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를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해양부령이”를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나목 중 “국가기관을 제외한다”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마목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등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도지사는 제18조제3항과”를 “위원장(소위원장)은 제33조제3항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발주청”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8. ~ 14. (생략)</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생략) ③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 11. (생략)</p>	<p>제1조(목적)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p> <p>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8. ~ 14.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 ----- ----- ----- ----- ----- ----- -----. 1. ~ 1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p> <p>가. (생략)</p> <p>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p> <p>다. ~ 라. (생략)</p> <p>마.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6항 및 7항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p> <p>2. ~ 8. (생략)</p>	<p>제5조(위원회의 기능) ----- -----.</p> <p>1.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 받는 기관은 제외한다)----- -----</p> <p>다. ~ 라. (현행과 같음)</p> <p>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p> <p>2. ~ 8.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9. 발주청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p> <p>10. ~ 11. (생략)</p> <p>제35조(설계점수의 체점방법 등)</p> <p>① ~ ⑤(생략)</p> <p>⑥도지사는 제18조제3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발주청(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p>	<p>9.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p> <p>10. ~ 11. (현행과 같음)</p> <p>제35조(설계점수의 체점방법 등)</p> <p>① ~ ⑤(현행과 같음)</p> <p>⑥위원장(소위원장)은 제33조제3항과 ----- ----- -----.</p>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9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을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으로 “수수료”를
“보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

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상한 및 한도액 범위안에서 중보
수를 받는다.

제3조제1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한 중개보수는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 표】

주택의 중개보수 (제2조제1항 관련)

1. 매매·교환 6억원 미만, 또는 임대차 등 3억원 미만의 경우

구 분	거 래 가 액	요율상한 (%)	한 도 액
매 매 · 교 환	5천만원 미만	1,000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000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000분의 4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000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00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분의 3	-

2. 매매·교환 6억원 이상 또는 임대차 등 3억원 이상의 경우 :
중개보수 한도(매매·교환 1,000분의 9, 임대차 등 1,000분의 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상호약정에 의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중개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수수료) ①중개업자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상한 및 한도액 범위안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는다.</p> <p>②중개수수료의 지불시기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약정에 의하되, 다른 약정이 없는한 거래대금 완불시에 지불한다.</p> <p>제3조(실비) ①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u>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 ----- 보수 ----- -----</p> <p>제2조(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상한 및 한도액 범위안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p> <p>제3조(실비) ①개업공인중개사 ----- ----- -----</p>

현 행	개 정 안																																																
<p>1. ~ 3. (생 략)</p> <p>②중개업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③(생 략)</p> <p>[별 표]</p> <p>주택의 중개수수료(제2조제1항 관련)</p> <p>1. 매매·교환 6억원 미만, 또는 임대차 등 3억원 미만의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거래가액</th> <th>요율상한(%)</th> <th>한도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매매·교환</td> <td>5천만원 미만</td> <td>1,000분의 6</td> <td>250,000원</td> </tr> <tr> <td>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td> <td>1,000분의 5</td> <td>800,000원</td> </tr> <tr> <td>2억원 이상 6억원 미만</td> <td>1,000분의 4</td> <td>-</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임대차등</td> <td>5천만원 미만</td> <td>1,000분의 5</td> <td>200,000원</td> </tr> <tr> <td>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td> <td>1,000분의 4</td> <td>300,000원</td> </tr> <tr> <td>1억원 이상 3억원 미만</td> <td>1,000분의 3</td> <td>-</td> </tr> </tbody> </table> <p>2. 매매·교환 6억원 이상 또는 임대차 등 3억원 이상의 경우 : 중개수수료 한도(매매·교환 1,000분의 9, 임대차 등 1,000분의 8)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의함.</p>	구분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000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000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000분의 4	-	임대차등	5천만원 미만	1,000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00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분의 3	-	<p>1. ~ 3. (현행과 같음)</p> <p>②개업공인중개사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p>[별 표]</p> <p>주택의 중개보수(제2조제1항 관련)</p> <p>1. 매매·교환 6억원 미만, 또는 임대차 등 3억원 미만의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거래가액</th> <th>요율상한(%)</th> <th>한도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매매·교환</td> <td>5천만원 미만</td> <td>1,000분의 6</td> <td>250,000원</td> </tr> <tr> <td>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td> <td>1,000분의 5</td> <td>800,000원</td> </tr> <tr> <td>2억원 이상 6억원 미만</td> <td>1,000분의 4</td> <td>-</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임대차등</td> <td>5천만원 미만</td> <td>1,000분의 5</td> <td>200,000원</td> </tr> <tr> <td>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td> <td>1,000분의 4</td> <td>300,000원</td> </tr> <tr> <td>1억원 이상 3억원 미만</td> <td>1,000분의 3</td> <td>-</td> </tr> </tbody> </table> <p>2. 매매·교환 6억원 이상 또는 임대차 등 3억원 이상의 경우 : 중개보수 한도(매매·교환 1,000분의 9, 임대차 등 1,000분의 8)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상호 약정에 의함.</p>	구분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000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000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000분의 4	-	임대차등	5천만원 미만	1,000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00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분의 3	-
구분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000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000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000분의 4	-																																														
임대차등	5천만원 미만	1,000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00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분의 3	-																																														
구분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000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000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000분의 4	-																																														
임대차등	5천만원 미만	1,000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00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분의 3	-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9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 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p> <p>1. (생략) 가. ~나. (생략) 2. ~4. (생략)</p> <p>〈신설〉</p> <p>5.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4조(기능)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p> <p>1. (현행과 같음) 가. ~나. (현행과 같음) 2.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p> <p>6.</p>

■ 예 산 안

-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9월 4일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 예산규모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398,492,000	100.00%	6,993,982,000	100.00%	404,510,000	5.78%
일반회계	6,262,992,000	84.65%	5,895,400,000	84.29%	367,592,000	6.24%
특별회계	1,135,500,000	15.35%	1,098,582,000	15.71%	36,918,000	3.36%
공기업특별회계	521,793,000	7.05%	521,793,000	7.46%	0	0.00%
지역개발기금운영	521,793,000	7.05%	521,793,000	7.46%	0	0.00%
기타특별회계	613,707,000	8.30%	576,789,000	8.25%	36,918,000	6.40%
의료급여기금운영	463,284,324	6.26%	456,796,000	6.53%	6,488,324	1.42%
치수사업	42,398,000	0.57%	42,398,000	0.61%	0	0.00%
경북도립대학교운영	10,066,866	0.14%	9,329,000	0.13%	737,866	7.91%
광역교통시설	9,899,564	0.13%	9,254,000	0.13%	645,564	6.98%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58,700,246	0.79%	52,300,000	0.75%	6,400,246	12.24%
학교용지부담금	29,358,000	0.40%	6,712,000	0.10%	22,646,000	337.40%

□ 수정가결 : 수정조서 붙임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 정 조 서

【과목변경】

(단위 : 천원)

쪽	소관 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과 목 명		비 고
				당 초	변 경	
44	기획 조정실	수산u-IT 융합모델화 사업	330,000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4년 9월 4일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 세입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장 관 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3,560,861	100.0	3,378,419	100.0	182,442	5.4	
이 전 수 입	소 계	3,335,259	93.7	3,175,995	94.0	159,264	5.0
	중앙정부입	2,958,823	83.1	2,897,974	85.8	60,849	2.1
	지방자치단체입	372,715	10.5	277,097	8.2	95,618	34.5
	기타이전수입	3,722	0.1	924	0.0	2,798	302.8
자 체 수 입	소 계	59,069	1.6	43,057	1.3	16,012	37.2
	교수-학습입	28,581	0.8	29,094	0.9	△513	△1.8
	행정활동수입	988	0.0	866	0.0	122	14.1
	자산수입	12,581	0.4	954	0.0	11,626	1218.4
	이자수입	12,150	0.3	12,143	0.4	7	0.1
기타수입	4,769	0.1	0	0.0	4,769	순증	
차 입	소 계	67,113	1.9	49,975	1.5	17,138	34.3
	지방교육채	67,113	1.9	49,975	1.5	17,138	34.3
기 타	소 계	99,419	2.8	109,392	3.2	△9,973	△9.1
	전년도이월금	99,419	2.8	109,392	3.2	△9,973	△9.1

□ 세출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사업별(부문, 정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3,560,861	100.0	3,378,419	100.0	182,442	5.4	
유아 및 초중 등 교육	소 계	3,407,917	95.7	3,222,596	95.4	185,321	5.8
	인적자원운용	1,721,918	48.4	1,702,578	50.4	19,340	1.1
	교수 - 학 활동 지원	214,997	6.0	166,640	4.9	48,356	29.0
	교육복지지원	348,712	9.8	326,163	9.7	22,549	6.9
	보건 / 급식 / 체육 활동	23,399	0.7	17,232	0.5	6,167	35.8
	학교 재정 지원 관리	849,846	23.9	840,074	24.9	9,772	1.2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249,045	7.0	169,909	5.0	79,136	46.6
평생 직업 교육	소 계	5,639	0.2	5,108	0.2	531	10.4
	평생 교육	5,181	0.1	4,650	0.1	531	11.4
	직업 교육	458	0.0	458	0.0	0	0.0
교육 일반	소 계	147,305	4.1	150,715	4.5	△3,410	△2.3
	교육행정일반	37,469	1.1	38,047	1.1	△578	△1.5
	기관운영관리	63,923	1.8	62,296	1.8	1,628	2.6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37,839	1.1	37,170	1.1	669	1.8
	예비비 및 타	8,074	0.2	13,202	0.4	△5,128	△38.8

